

기 술 용 역 계 약 서[변경]

계 약 자	발 주 기 관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
	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명성엔지니어링 - 법인등록 번호:131211-0040887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18 (동아프라자 301호) - 전 화 번 호 : 031) 886-7422 - 대 표 자 : 김 선 무
계 약 내 용	계 약 건 명	상주영천고속도로 시설물 안전 · 하자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변경]
	계 약 금 액 (당 초)	일금오억팔천삼백만원정(W583,000,000) - 공 급 가 액 : 일금오억삼천만원정(W530,000,000) -정기점검3회 : 일금이억이천오백만원정(W225,000,000) -정밀점검1회 : 일금이억이천만원정(W220,000,000) -성능평가1회 : 일금팔천오백만원정(W85,000,000) - 부가가치세 : 일금오천삼백만원정(W53,000,000) ※하자점검4회(점검시 병행실시) 용역대가 포함
	계 약 금 액 (변 경)	일금육억이백팔십만원정(W602,800,000) - 공 급 가 액 : 일금오억사천팔백만원정(W548,000,000) -정기점검3회 : 일금이억이천오백만원정(W225,000,000) -정밀점검1회 : 일금이억이천만원정(W220,000,000) -성능평가1회 : 일금팔천오백만원정(W85,000,000) -드론촬영1회 : 일금천팔백만원정(W18,000,000) - 부가가치세 : 일금오천사백팔십만원정(W54,800,000) ※하자점검4회(점검시 병행실시) 용역대가 포함
	계 약 기 간 (변 경)	2022.05.13 . ~ 2024. 02. 29.
	계약보증금	계약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 증권으로 제출)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마다 0.25%(용역계약 제15조)
	기 타 사 항	- 용역범위 : 정기점검 3회, 정밀점검 1회, 성능평가1회, 긴급점검 2회, 하자점검 4회, 드론촬영1회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2항) - 성과품 제출 후 익월 말에 지급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3. 12. 15. 불임서류 : 1.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2.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산출내역서 1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경북 영천시 화산면 신정길 60-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18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		(주)명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경 준 (인)		대표이사 김 선 무 (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상주영천고속도로 시설물 안전·하자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의 실시자인 (주)명성엔지니어링(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정기·하자·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 내용 및 범위) 용역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준용한다.

- ① 용역 내용 : 상주영천고속도로 시설물 안전·하자점검 및 성능평가
- ② 용역의 범위 : 정기점검3회, 정밀점검1회, 성능평가1회, 하자점검4회 (점검시 병행 실시)

1. 점검횟수

구 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성능평가	드론촬영	하자점검	비고
2022년	상반기	○	-	-	-	○	
	하반기	○	-	-	-	○	
2023년	상반기	○	-	-	-	○	
	하반기	-	○	○	○	○	

2. 점검대상 시설물

구 분	합계	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비고
		1종	2종	기타종				
정기/정밀	135개	12개	30개	-	12개	15개	66개	정기·정밀점검시 하자점검 포함
하자점검	122개	12개	30개	68개	12개	-	-	
성능평가	30개	-	30개	-	-	-	-	하자만료전('24.6) 정밀점검시 시행
드론촬영	101개	-	-	-	-	-	101개	과업추가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22.05.13일부터 2024년 02월29일까지 한다. 단,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그 사무 위임받아 관장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명성엔지니어링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기관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공고」(이하 “공고문”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 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발주기관은 해당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과업지시서 준용)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종사하는 계약당사자의 고용인 및 종사자에 대해 안전사고와 재해예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인명,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보상 책임을 진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제19조(기성부분의 인수)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불가항력)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7조(검사)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7조(검사)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7조(검사)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5조(지체상금) 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 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5조(지체상금)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제1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발주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인수) ① 발주기관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7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기관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0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2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3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6개월 단위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검사완료일부터 익월 말일까지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4조(대가의 지급) 제4항을 준용한다.

제24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익월 말일까지(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9.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도급 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1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분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하도급계약·변경·해지 시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5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1조(불가항력)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7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3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8조(용역의 일시정지)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6조 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28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한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 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3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기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제3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33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021.12.1. 시행, 일부개정)을 참고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관할법원의 지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 소재지에 위치한 관할법원으로 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목 적)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상주영천고속도로(주)와 (주)명성엔지니어링간에 체결하는 용역 계약 내용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 ① 본 계약에서 상주영천고속도로(주)를 “발주기관”, (주)명성엔지니어링을 “계약상대자”이라 칭한다.
- ② 용역계약의 착수, 감독, 검사, 인수, 하자관리, 계약체결(수정계약 포함) 및 계약 해제·해지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재난안전팀**이 수행한다.

제 3 조 (착 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재난안전팀** 감독관에게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의 수정)

-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면상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 5 조 (과업의 중지 및 계약해지)

-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5일 이전에 계약해제,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일이 경과한 후 계약의 해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1. “발주기관”이 부실용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였으나, 상당기간 이를 시정조치하지 않을 경우
 2.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제 6 조 (안전관리)

- ① “상주영천고속도로 시설물 안전·하자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변경]”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간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 ② 상주영천고속도로 용역 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용역 완수를 위해 안전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 ④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에 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발주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월1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 및 시설물 안전점검 중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용역을 수행 하여야 한다.

제 7 조 (보안대책)

-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회사 직원이 대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

에 대하여 용역계약 수행중이거나 완료 후, 그리고 소속회사의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고용하고 있는 용역계약 관련자가 만약 이를 누설하였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 2항을 준수토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대가의 지급)

- ①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은 예금주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 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좌 변경 시는 즉시 서면으로 변경 사항을 해당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발주기관”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지급 의뢰 요청 시 14일 이내(“발주기관”의 주거래은행 영업일 기준)에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재정상황과 매월 자금인출 시기를 고려하여 익월 30일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 한다.
- ④ 이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 9 조 (공정 관리)

- ① “발주기관”의 “상주영천고속도로 시설물 안전·하자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변경]”은 예정공정표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예정공정표는 일단위 또는 주단위 해당공정별 공정율이 표시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공정표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의 시설관리팀 담당자에게 검토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예정공정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행정사항 등의 부담)

본 용역 진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공정별 사진 및 보고서를 포함하여 FMS등록 등 행정처리의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1 조 (휴일 및 야간작업)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용역감독관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2 조 (민원처리)

-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기타사항)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 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②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서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과업지시서 내용을 준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 14 조 (분쟁 해결)

본 계약에 관하여 이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발주기관” : 경북 영천시 화산면 신정길 60-40
상주영천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김 경 준 (인)

“계약상대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18(동아프라자301호)
(주)명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선 무 (인)



상주영천고속도로 시설물 안전·하자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변경]

과업지시서

2023. 12.



상주영천고속도로(주)

1. 과업명

- 『 상주영천고속도로 시설물 안전·하자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변경] 』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동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시설물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하자보수 조치를 취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정기·정밀점검·하자보수·성능평가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3.1 대상시설물 현황

- 대상시설물

구분	합계	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비고
		1·2종	기타종	1종	2종	2종	2종/기타종	
정기(3회)/정밀(1회)	135개	42개	-	2개	10개	15개	66개	정기/정밀 점검시 하자점검 포함
하자점검(4회) (22.5~23.12)	122개	42개	68개	2개	10개	-	-	
성능평가(1회)	30개	30개	-	-	-	-	-	2종 교량
드론촬영(1회)	101개	-	-	-	-	-	101개	과업추가 2종(25) 기타종(76)

*하자점검 4회 : 정기/정밀 점검시 포함 시행, 성능평가 : 2종교량 성능평가 실시, 드론촬영1회

- 정기·정밀점검 시설물 현황(교량42개, 터널12개, 옹벽15개, 절토사면66개)

④ 교량(42개소)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	이정거리(Km)	연장(m)	차로수	형식	종별	비고
1	1	낙동JCT교	0+407~0+527	0.41~0.53	120.0	6	ST.Box Girder	1종	중용구간
2	1	상촌교	2+720~3+160	2.72~3.16	440.0	6	DR Girder	2종	중용구간
3	1	양지교	4+013~4+238	4.01~4.24	225.0	4	IPC Girder	2종	
4	1	장곡교	5+578~5+850	5.58~5.85	270.0	4	IPC Girder	2종	
5	1	낙동강대교	6+471~7+241	6.47~7.24	770.0	4	DR Girder	1종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	이정거리(km)	연장(m)	차로수	형식	종별	비고
6	2	신개교	2+197~2+252	9.59~9.65	55.0	4	SB-Arch	2종	
7	2	월가교	3+538~3+644	10.93~11.04	105.0	4	PSC BEAM	2종	
8	3	도개교	0+343~743	16.36~16.76	400.0	4	PnP Girder	2종	
9	3	신계교	12+720~12+895	28.77~28.94	175.0	4	PSC BEAM	2종	
10	4	산호교	1+640~2+000	30.62~30.98	360.0	4	IPC Girder	2종	
11	5	오로교	0+528~0+913	36.76~37.15	385.0	4	PC BEAM(PCI)	2종	
12	5	오실교	1+508~1+788	37.74~38.02	280.0	4	PC BEAM(PCI)	2종	
13	5	불당교	2+582~2+822	38.82~39.06	240.0	4	PC BEAM(PCI)	2종	
14	5	내리교	4+842~5+042	41.08~41.28	200.0	4	PC BEAM(PCI)	2종	
15	5	군위JCT R-A4교	2+401~1+451	군위JCT연결로 (영업소↔중앙선)	50.0	2	ST.Box Girder	2종	
16	5	군위JCT R-C교	0+113~0+353	군위JCT연결로 (영업소↔본선)	240.0	1	PC BEAM(PCI)	2종	
17	6	장기교	0+030~0+210	44.25~44.43	180.0	4	IPC Girder	2종	
18	6	금매교	2+442~2+762	46.66~46.98	320.0	4	PSC e-BEAM	1종	
19	6	가호교	8+694~8+827	52.91~53.04	132.5	4	PUS Girder	1종	
20	7	산성교	1+038~1+323	56.60~56.88	285.0	4	IPC Girder	2종	
21	7	배골교	6+424~6+529	61.98~62.09	105.0	4	PSC Girder	2종	
22	7	화남1교	7+838~7+888	63.40~63.45	50.0	4	SB-Arch	2종	
23	7	화남교	8+210~8+445	63.77~64.00	235.0	4	ST.Box Girder	1종	
24	8	가천교	0+090~0+405	65.45~65.76	315.0	4	PSC BEAM	2종	
25	8	신녕교	1+962~2+082	67.32~67.44	120.0	5	PSC BEAM	2종	가감속 포함
26	8	창정교	4+184~4+359	69.54~69.72	175.0	4	PSC BEAM	2종	
27	8	중들교	6+394~6+484	71.74~71.84	105.0	4	PSC BEAM	2종	
28	8	화산JCT R-A교	0+225~0+280	화산JCT연결로 (영업소↔대구포항)	55.0	1	ST.Box Girder	2종	
29	8	화산JCT R-A1교	0+375~0+715	화산JCT연결로 (영업소↔대구포항)	340.0	4	ST.Box Girder	1종	
30	8	화산JCT R-H교	0+341~0+441	화산JCT연결로 (대구포항↔영업소)	100.0	1	ST.Box Girder	1종	
31	9	가래실교	0+161~0+476	75.52~75.83	315.0	4	LIT Girder	2종	
32	9	암기교	0+796~0+976	76.15~76.33	180.0	4	DR Girder	2종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	이정거리(km)	연장(m)	차로수	형식	종별	비고
33	9	고현천교	3+693~4+233	79.05~79.59	540.0	4	IPC Girder	1종	
34	9	도림천교	4+811~4+991	80.17~80.35	180.0	4	DR Girder	2종	
35	9	오미교	6+290~6+340	81.65~81.70	50.0	4	SB-Arch	2종	
36	10	산하교	0+113~0+523	84.77~85.18	410.0	4	PSC BEAM (DR Girder)	1종	
37	10	단포교	0+845~1+025	85.50~85.68	180.0	4	PSC BEAM (DR Girder)	2종	
38	10	대성교	4+485~4+605	89.14~89.26	120.0	4	PSC BEAM	2종	
39	10	내포교	8+425~8+545	93.08~93.20	120.0	4	PSC BEAM	2종	
40	10	반정교	9+075~9+455	93.73~94.06	365.0	4	PUS Girder	1종	
41	10	영천JCT R-A교	0+075~0+455	94.06~94.43	380.0	2	ST.Box Girder	1종	
42	10	영천JCT R-B교	0+539~0+736	94.06~94.26	200.0	2	ST.Box Girder	1종	

터널(12개소)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	이정거리(km)	연장(m)	차로수	형식	종별	비고
1	3	군위터널(상주)	6+010~6+975	22.05~23.02	965.0	2	NATM	2종	
2	3	군위터널(영천)	6+010~6+940	22.05~22.98	930.0	2	NATM	2종	
3	4	산법터널(상주)	3+950~4+340	32.97~33.35	375.0	2	NATM	2종	
4	4	산법터널(영천)	3+950~4+340	32.93~33.32	390.0	2	NATM	2종	
5	4	평호터널(상주)	5+310~7+145	24.21~36.18	1,965.0	2	NATM	1종	
6	4	평호터널(영천)	5+310~7+145	34.29~36.13	1,835.0	2	NATM	1종	
7	5	불로터널(상주)	2+990~3+465	39.23~39.70	475.0	2	NATM	2종	
8	5	불로터널(영천)	3+025~3+515	39.26~39.75	490.0	2	NATM	2종	
9	5	중구터널(상주)	6+035~6+420	42.31~42.69	385.0	2	NATM	2종	
10	5	중구터널(영천)	6+035~6+420	42.31~42.69	385.0	2	NATM	2종	
11	5	효령터널(상주)	6+600~7+560	42.84~43.80	960.0	2	NATM	2종	
12	5	효령터널(영천)	6+580~7+560	42.82~43.80	980.0	2	NATM	2종	

● 옹 벽(15개소)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	연장	높이	형식	종별	비고
1	3	패널식옹벽01	4+680~5+176	496.0	19.0	패널식	2종	
2	3	패널식옹벽02	9+400~9+838	438.0	15.9	패널식	2종	
3	4	블럭식옹벽03	0+195~0+413	218.0	8.7	블럭식	2종	
4	4	블럭식옹벽04	1+957~2+230	273.0	12.5	블럭식	2종	
5	4	패널식옹벽05	2+247~2+402	155.0	25.5	패널식	2종	
6	5	블럭식옹벽06	군위JCT R-A~C 0+020~0+134	184.0	8.4	블럭식	2종	
7	6	패널식옹벽07	4+934~5+103	173.0	12.0	블럭식	2종	
8	6	패널식옹벽08	4+941~5+933	977.0	9.1	패널식	2종	
9	6	블럭식옹벽09	6+979~7+160	181.0	9.3	블럭식	2종	
10	6	패널식옹벽10	10+254~10+455	201.0	27.5	패널식	2종	
11	7	패널식옹벽11	6+780~6+915	136.9	7.5	패널식	2종	
12	7	패널식옹벽12	7+872~8+230	798.0	18.7	패널식	2종	
13	8	패널식옹벽13	7+767~7+890	125.6	13.9	패널식	2종	
14	9	패널식옹벽14	0+090~0+160	198.0	10.3	패널식	2종	
15	9	패널식옹벽15	3+585~3+625	182.2	12.8	패널식	2종	

● 절토사면(66개소)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	방향	연장	높이	형식	종별	비고
1	1	영천절토01	1+000~1+400	영천	400	34	혼합	2종	
2	1	상주절토02	2+240~2+510	상주	270	38	혼합	2종	
3	1	상주절토03	3+540~3+830	상주	290	52	혼합	2종	
4	1	영천절토04	4+300~5+120	영천	820	48	혼합	2종	
5	1	상주절토05	4+330~4+630	상주	300	53	혼합	2종	
6	2	영천절토06	1+680~2+000	영천	320	32	혼합	2종	
7	2	상주절토07	도개IC R-A 0+920~0+070	상주	260	30	혼합	2종	
8	2	상주절토08	6+680~6+940	상주	260	41	혼합	2종	
9	2	상주절토09	7+100~7+540	상주	440	40	혼합	2종	
10	2	상주절토10	7+920~8+120	상주	200	49	혼합	2종	
11	2	상주절토11	8+500~8+620	상주	120	30	-	2종	
12	3	영천절토12	0+830~1+250	영천	420	32	혼합	2종	
13	3	상주절토13	0+850~1+270	상주	420	45	혼합	2종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	방향	연장	높이	형식	종별	비고
14	3	상주절토14	1+290~1+490	상주	200	40	혼합	2중	
15	3	상주절토15	2+090~2+320	상주	230	31	혼합	2중	
16	3	상주절토16	5+180~6+040	상주	860	43	혼합	2중	
17	3	영천절토17	5+600~6+040	영천	440	33	혼합	2중	
18	3	영천절토18	6+910~7+480	영천	570	31	혼합	2중	
19	3	영천절토19	8+740~8+960	영천	220	37	혼합	2중	
20	3	영천절토20	9+840~10+060	영천	220	46	혼합	2중	
21	3	영천절토21	10+640~11+020	영천	380	33	혼합	2중	
22	3	영천절토22	11+470~11+660	영천	190	31	혼합	2중	
23	3	영천절토23	11+660~12+100	영천	440	40	혼합	2중	
24	4	상주절토24	1+430~1+650	상주	175	45	혼합	2중	
25	4	영천절토25	2+230~2+750	영천	520	96	혼합	2중	
26	4	영천절토26	4+645~4+950	영천	305	47	혼합	2중	
27	5	상주절토27	0+000~0+140	상주	140	36	혼합	2중	
28	5	영천절토28	0+940~1+180	영천	240	41	-	2중	
29	5	상주절토29	1+930~2+220	상주	290	39	혼합	2중	
30	5	상주절토30	2+290~2+450	상주	160	41	혼합	2중	
31	5	영천절토31	3+790~3+940	영천	150	31	혼합	2중	
32	5	영천절토32	4+310~4+660	영천	350	47	혼합	2중	
33	5	영천절토33	군위JCT R-A 0+360~0+690	영천	330	42	혼합	2중	
34	5	영천절토34	군위JCT R-A 1+890~2+150	영천	260	36	혼합	2중	
35	6	상주절토35	이설도로#2 0+160~0+420	상주	260	37	혼합	2중	
36	6	상주절토36	8+850~9+230	상주	380	37	혼합	2중	
37	6	상주절토37	9+820~10+580	상주	760	50	혼합	2중	
38	6	영천절토38	10+260~10+710	영천	450	42	혼합	2중	
39	6	영천절토39	10+970~11+230	영천	260	39	혼합	2중	
40	7	영천절토40	0+520~0+840	영천	320	36	혼합	2중	
41	7	영천절토41	0+349~0.540	영천	191	33	혼합	2중	
42	7	상주절토42	3+080~3+240	상주	160	37	혼합	2중	
43	7	상주절토43	3+330~3+520	상주	220	50	혼합	2중	
44	8	상주절토44	1+020~1+320	상주	300	35	-	2중	
45	8	영천절토45	3+720~3+900	영천	180	32	-	2중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	방향	연장	높이	형식	종별	비고
46	8	영천절토46	4+700~5+060	영천	360	47	-	2종	
47	8	상주절토47	5+140~5+420	상주	280	42	-	2종	
48	8	영천절토48	5+700~5+820	영천	120	38	-	2종	
49	8	상주절토49	5+700~5+840	상주	140	32	-	2종	
50	8	상주절토50	6+120~6+360	상주	240	36	-	2종	
51	8	영천절토51	7+020~7+200	영천	180	34	-	2종	
52	8	영천절토52	7+440~7+580	영천	140	45	-	2종	
53	8	영천절토53	8+060~8+200	영천	140	36	-	2종	
54	8	영천절토54	8+980~9+160	영천	180	49	-	2종	
55	8	영천절토55	9+400~9+580	영천	180	39	-	2종	
56	8	상주절토56	9+604~9+740	상주	136	42	-	2종	
57	8	영천절토57	9+800~10+000	영천	280	47	-	2종	
58	8	영천절토58	화산JCT R-A 0+920~1+340	영천	420	39	-	2종	
59	8	영천절토59	화산JCT R-A 1+600~1+723	영천	203	34	-	2종	
60	8	영천절토60	화산JCT R-D 0+140~0+260	영천	120	38	-	2종	
61	8	영천절토61	화산JCT R-D 0+320~0+537	영천	217	46	-	2종	
62	9	영천절토62	2+190~2+410	영천	220	36	혼합	2종	
63	10	영천절토63	4+860~5+300	영천	440	33.6	혼합	2종	
64	10	상주절토64	4+900~5+300	상주	400	40.1	혼합	2종	
65	10	상주절토65	6+280~6+480	상주	200	32.3	혼합	2종	
66	10	영천절토66	7+100~7+480	영천	380	40.2	혼합	2종	

• 하자점검 시설물 현황(교량110개, 터널12개)

● 1. 2종 교량(42개소)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	이정거리(km)	연장(m)	차로수	형식	종별	비고
1	1	낙동JCT교	0+407~0+527	0.41~0.53	120.0	6	ST.Box Girder	1종	중용 구간
2	1	상촌교	2+720~3+160	2.72~3.16	440.0	6	DR Girder	2종	중용 구간
3	1	양지교	4+013~4+238	4.01~4.24	225.0	4	IPC Girder	2종	
4	1	장곡교	5+578~5+850	5.58~5.85	270.0	4	IPC Girder	2종	
5	1	낙동강대교	6+471~7+241	6.47~7.24	770.0	4	DR Girder	1종	
6	2	신개교	2+197~2+252	9.59~9.65	55.0	4	SB-Arch	2종	
7	2	월가교	3+538~3+644	10.93~11.04	105.0	4	PSC BEAM	2종	
8	3	도개교	0+343~743	16.36~16.76	400.0	4	PnP Girder	2종	
9	3	신계교	12+720~12+895	28.77~28.94	175.0	4	PSC BEAM	2종	
10	4	산호교	1+640~2+000	30.62~30.98	360.0	4	IPC Girder	2종	
11	5	오로교	0+528~0+913	36.76~37.15	385.0	4	PC BEAM(PCI)	2종	
12	5	오실교	1+508~1+788	37.74~38.02	280.0	4	PC BEAM(PCI)	2종	
13	5	불당교	2+582~2+822	38.82~39.06	240.0	4	PC BEAM(PCI)	2종	
14	5	내리교	4+842~5+042	41.08~41.28	200.0	4	PC BEAM(PCI)	2종	
15	5	군위JCT R-A4교	2+401~1+451	군위JCT연결로 (영업소↔중앙선)	50.0	2	ST.Box Girder	2종	
16	5	군위JCT R-C교	0+113~0+353	군위JCT연결로 (영업소↔본선)	240.0	1	PC BEAM(PCI)	2종	
17	6	장기교	0+030~0+210	44.25~44.43	180.0	4	IPC Girder	2종	
18	6	금매교	2+442~2+762	46.66~46.98	320.0	4	PSC e-BEAM	1종	
19	6	가호교	8+694~8+827	52.91~53.04	132.5	4	PUS Girder	1종	
20	7	산성교	1+038~1+323	56.60~56.88	285.0	4	IPC Girder	2종	
21	7	배골교	6+424~6+529	61.98~62.09	105.0	4	PSC Girder	2종	
22	7	화남1교	7+838~7+888	63.40~63.45	50.0	4	SB-Arch	2종	
23	7	화남교	8+210~8+445	63.77~64.00	235.0	4	ST.Box Girder	1종	
24	8	가천교	0+090~0+405	65.45~65.76	315.0	4	PSC BEAM	2종	
25	8	신녕교	1+962~2+082	67.32~67.44	120.0	5	PSC BEAM	2종	가감속 포함
26	8	창정교	4+184~4+359	69.54~69.72	175.0	4	PSC BEAM	2종	
27	8	중들교	6+394~6+484	71.74~71.84	105.0	4	PSC BEAM	2종	
28	8	화산JCT R-A교	0+225~0+280	화산JCT연결로 (영업소↔대구포항)	55.0	1	ST.Box Girder	2종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	이정거리(km)	연장(m)	차로수	형식	종별	비고
29	8	화산JCT R-A교	0+375~0+715	화산JCT연결로 (영업소↔대구포항)	340.0	4	ST.Box Girder	1종	
30	8	화산JCT R-H교	0+341~0+441	화산JCT연결로 (대구포항↔영업소)	100.0	1	ST.Box Girder	1종	
31	9	가래실교	0+161~0+476	75.52~75.83	315.0	4	LIT Girder	2종	
32	9	암기교	0+796~0+976	76.15~76.33	180.0	4	DR Girder	2종	
33	9	고현천교	3+693~4+233	79.05~79.59	540.0	4	IPC Girder	1종	
34	9	도림천교	4+811~4+991	80.17~80.35	180.0	4	DR Girder	2종	
35	9	오미교	6+290~6+340	81.65~81.70	50.0	4	SB-Arch	2종	
36	10	산하교	0+113~0+523	84.77~85.18	410.0	4	PSC BEAM (DR Girder)	1종	
37	10	단포교	0+845~1+025	85.50~85.68	180.0	4	PSC BEAM (DR Girder)	2종	
38	10	대성교	4+485~4+605	89.14~89.26	120.0	4	PSC BEAM	2종	
39	10	내포교	8+425~8+545	93.08~93.20	120.0	4	PSC BEAM	2종	
40	10	반정교	9+075~9+455	93.73~94.06	365.0	4	PUS Girder	1종	
41	10	영천JCT R-A교	0+075~0+455	94.06~94.43	380.0	2	ST.Box Girder	1종	
42	10	영천JCT R-B교	0+539~0+736	94.06~94.26	200.0	2	ST.Box Girder	1종	

● 기타종 교량(68개소)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	이정거리(km)	연장(m)	차로수	형식	종별	비고
1	1	승곡교	0+020~0+110	0.02~0.11	90.0	6	PSC Beam	기타	중용 구간
2	1	상원교	0+647~0+687	0.65~0.69	40.0	6	IPC Girder	기타	
3	1	송계교	5+321~5+333	5.32~5.33	12.3	4	Precast Arch	기타	
4	1	낙동JCT교 R-C1교	0+019~0+044	낙동JCT연결로 (중부내륙→본선)	24.7	1	RC 라멘	기타	
5	1	낙동JCT교 R-C2교	0+202~0+217	낙동JCT연결로 (중부내륙→본선)	14.5	1	RC 라멘	기타	
6	1	낙동JCT교 R-D교	0+341~0+353	낙동JCT연결로 (본선→중부내륙)	12.0	1	RC 라멘	기타	
7	1	낙동JCT교 R-F교	1+450~1+490	낙동JCT연결로 (청주상주→본선)	40.0	1	IPC Girder	기타	
8	1	낙동JCT교 R-G교	0+696~0+711	낙동JCT연결로 (중부내륙)	15.0	4	RC 라멘	기타	
9	1	상촌육교	0+140~0+170	1.54 (본선험단육교)	13.0	-	PSC Beam	기타	
10	1	상촌생태 육교	2+330~2+390	2.33~2.39 (본선험단육교)	60.0	-	Precast Arch	기타	
11	2	용내교	0+042~0+133	7.43~7.52	90.0	4	DR Girder	기타	
12	2	용산교	1+304~1+399	8.70~8.79	35.0	4	PSC Beam	기타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	이정거리(km)	연장(m)	차로수	형식	종별	비고
13	2	신두교	2+671~2+693	10.07~10.09	22.0	4	RC 라멘	기타	
14	2	도개IC교	4+710~4+746	12.10~12.14	35.0	4	PSC Beam	기타	
15	2	신천교	5+715~5+786	13.11~13.18	70.0	4	PSC Beam	기타	
16	2	원당교	6+453~6+463	13.85~13.86	10.3	4	함형 라멘	기타	
17	2	도개IC R-A1교	0+014~0+045	도개IC 연결로 (국도횡단육교)	30.0	2	PSC Beam	기타	
18	2	도개IC R-A2교	0+231~0+302	도개IC 연결로 (국도↔영업소)	70.0	4	PSC Beam	기타	
19	2	도개IC R-A3교	0+772~0+785	도개IC 연결로 (영업소↔본선)	13.0	2	RC 라멘	기타	
20	2	도개IC R-D교	0+312~0+324	도개IC 연결로 (본선↔영업소)	12.0	1	RC 라멘	기타	
21	2	도개IC R-E교	0+114~0+129	도개IC 연결로 (영업소↔본선)	15.0	1	RC 라멘	기타	
22	2	일선육교	7+790~7+850	15.18~15.26 (본선횡단육교)	60.0	-	Precast Arch	기타	
23	3	다곡2교	2+457~2+487	18.50~18.53	30.0	4	PSC Beam	기타	
24	3	다곡1교	3+511~3+521	19.55~19.56	10.0	4	함형 라멘	기타	
25	3	달산2교	8+091~8+131	24.14~24.18	40.0	4	PnP Girder	기타	
26	3	달산1교	10+150~10+220	26.20~26.27	70.0	4	PSC Beam	기타	
27	3	개량교	12+430~12+461	28.46~28.49	30.0	4	PSC Beam	기타	
28	4	서경교	0+935~0+945	29.92~22.93	10.0	4	RC 라멘	기타	
29	5	불로교	2+924~2+969	39.16~39.20	45.0	4	IPC Girder	기타	
30	5	효령교	6+474~6+554	42.71~42.79	80.0	4	IPC Girder	기타	
31	5	갈외교	7+660~7+750	43.90~43.99	90.0	4	PSC Beam	기타	
32	5	군위JCT R-A1교	0+181~0+216	군위JCT연결로 (영업소↔본선)	35.0	2	PSC Beam	기타	
33	5	군위JCT R-A2교	0+797~0+814	군위JCT연결로	16.7	4	Precast Arch	기타	
34	5	군위JCT R-A3교	1+742~1+772	군위JCT연결로	29.9	4	Precast Arch	기타	
35	6	마시교	3+863~3+888	48.08~48.10	25.0	4	PSC-e Beam	기타	
36	6	화계교	4+893~4+938	49.11~49.16	45.0	4	Precom Girder	기타	
37	6	홍골천교	5+065~5+079	49.28~49.30	13.5	4	Precast Arch	기타	
38	6	신천교	5+946~5+964	50.16~50.18	18.0	4	Precast Arch	기타	
39	6	신화교	6+647~6+662	50.87~50.88	15.0	4	RC 라멘	기타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	이정거리(km)	연장(m)	차로수	형식	종별	비고
40	6	창평교	7+257~7+292	51.48~51.51	35.2	4	PSC Beam	기타	
41	6	동군위IC교	8+079~8+109	52.30~52.33	30.0	4	PSC-e Beam	기타	
42	7	치산생태 육교	2+300~2+360	57.86~57.92	60.0	-	Precast Arch	기타	
43	7	치산교	2+447~2+493	58.01~58.05	45.8	4	DR Girder	기타	
44	7	남원교	4+435~4+525	59.99~60.08	90.0	4	IPC Girder	기타	
45	7	부산교	4+780~4+795	60.34~60.35	15.2	4	RC 라멘	기타	
46	7	배골1교	6+204~6+234	61.76~61.79	30.0	4	PSC Beam	기타	
47	7	화남2교	7+554~7+589	63.11~63.15	35.0	4	PSC Beam	기타	
48	7	화남1-1교	7+738~7+750	63.30~63.31	12.2	4	RC 라멘	기타	
49	8	효정교	1+601~1+618	66.96~66.98	17.4	4	RC 라멘	기타	
50	8	위지교	1+823~1+833	67.18~67.19	10.3	4	RC 라멘	기타	
51	8	신녕IC교	2+390~2+420	67.32~67.44	30.0	4	PSC Beam	기타	
52	8	갈매교	3+628~3+643	68.99~69.01	15.4	4	Precast Arch	기타	
53	8	효지교	7+734~7+746	73.09~73.10	12.0	4	Precast Arch	기타	
54	8	화산JCT R-A2교	1+464~1+510	화산JCT연결로 (영업소→본선)	45.0		IPC Girder	기타	
55	8	신녕IC Ramp교	0+023~0+053	신녕IC연결로 (국도횡단육교)	30.0		PSC Beam	기타	
56	9	암기육교	0+062~0+107	76.79 (본선횡단육교)	45.0	-	IPC Girder	기타	
57	9	애병교	2+970~2+988	78.33~78.35	18.0	4	Precast Arch	기타	
58	9	도림1육교	0+066~0+111	79.89 (본선횡단육교)	45.0	-	IPC Girder	기타	
59	9	도림2육교	0+042~0+087	80.64 (본선횡단육교)	45.0	-	IPC Girder	기타	
60	9	동영천IC교	0+787~0+832	동영천IC연결로 (영업소→국지도)	45.0	4	IPC Girder	기타	
61	9	언하1교	8+651~8+696	84.01~84.05	45.0	4	IPC Girder	기타	
62	9	언하2교	8+808~8+853	84.17~84.20	45.0	4	IPC Girder	기타	
63	10	목골교	2+539~2+550	87.20~87.21	10.7	4	Precast Arch	기타	
64	10	대곡교	5+506~5+522	90.16~90.18	15.6	4	Precast Arch	기타	
65	10	오천교	7+467~7+527	92.13~92.19	60.0		PSC Beam	기타	
66	10	원당육교	0+043~0+088	88.22 (본선횡단육교)	45.0	-	DR Girder	기타	
67	10	의곡교	0+132~0+155	본선 외 하천이설교량	23.0	4	강합성 라멘	기타	
68	10	반계교 (내감교)	북안IC 연결로 (영업소↔군도)	북안IC연결로 (영업소↔군도)	30.0		RC 라멘	기타	

터널(12개소)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	이정거리(km)	연장(m)	차로수	형식	종별	비고
1	3	군위터널(상주)	6+010~6+975	22.05~23.02	965.0	2	NATM	2종	
2	3	군위터널(영천)	6+010~6+940	22.05~22.98	930.0	2	NATM	2종	
3	4	산법터널(상주)	3+950~4+340	32.97~33.35	375.0	2	NATM	2종	
4	4	산법터널(영천)	3+950~4+340	32.93~33.32	390.0	2	NATM	2종	
5	4	평호터널(상주)	5+310~7+145	24.21~36.18	1,965.0	2	NATM	1종	
6	4	평호터널(영천)	5+310~7+145	34.29~36.13	1,835.0	2	NATM	1종	
7	5	불로터널(상주)	2+990~3+465	39.23~39.70	475.0	2	NATM	2종	
8	5	불로터널(영천)	3+025~3+515	39.26~39.75	490.0	2	NATM	2종	
9	5	중구터널(상주)	6+035~6+420	42.31~42.69	385.0	2	NATM	2종	
10	5	중구터널(영천)	6+035~6+420	42.31~42.69	385.0	2	NATM	2종	
11	5	효령터널(상주)	6+600~7+560	42.84~43.80	960.0	2	NATM	2종	
12	5	효령터널(영천)	6+580~7+560	42.82~43.80	980.0	2	NATM	2종	



• 2종 시설물 성능평가 시설물 현황(교량30개)

● 2종 교량(30개소)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	이정거리(km)	연장(m)	차로수	형식	종별	비고
1	1	상촌교	2+720~3+160	2.72~3.16	440.0	6	DR Girder	2종	중용 구간
2	1	양지교	4+013~4+238	4.01~4.24	225.0	4	IPC Girder	2종	
3	1	장곡교	5+578~5+850	5.58~5.85	270.0	4	IPC Girder	2종	
4	2	신개교	2+197~2+252	9.59~9.65	55.0	4	SB-Arch	2종	
5	2	월가교	3+538~3+644	10.93~11.04	105.0	4	PSC BEAM	2종	
6	3	도개교	0+343~743	16.36~16.76	400.0	4	PnP Girder	2종	
7	3	신계교	12+720~12+895	28.77~28.94	175.0	4	PSC BEAM	2종	
8	4	산호교	1+640~2+000	30.62~30.98	360.0	4	IPC Girder	2종	
9	5	오로교	0+528~0+913	36.76~37.15	385.0	4	PC BEAM(PCI)	2종	
10	5	오실교	1+508~1+788	37.74~38.02	280.0	4	PC BEAM(PCI)	2종	
11	5	불당교	2+582~2+822	38.82~39.06	240.0	4	PC BEAM(PCI)	2종	
12	5	내리교	4+842~5+042	41.08~41.28	200.0	4	PC BEAM(PCI)	2종	
13	5	군위JCT R-A4교	2+401~1+451	군위JCT연결로 (영업소↔중앙선)	50.0	2	ST.Box Girder	2종	
14	5	군위JCT R-C교	0+113~0+353	군위JCT연결로 (영업소↔본선)	240.0	1	PC BEAM(PCI)	2종	
15	6	장기교	0+030~0+210	44.25~44.43	180.0	4	IPC Girder	2종	
16	7	산성교	1+038~1+323	56.60~56.88	285.0	4	IPC Girder	2종	
17	7	배골교	6+424~6+529	61.98~62.09	105.0	4	PSC Girder	2종	
18	7	화남1교	7+838~7+888	63.40~63.45	50.0	4	SB-Arch	2종	
19	8	가천교	0+090~0+405	65.45~65.76	315.0	4	PSC BEAM	2종	
20	8	신녕교	1+962~2+082	67.32~67.44	120.0	5	PSC BEAM	2종	가감속 포함
21	8	창정교	4+184~4+359	69.54~69.72	175.0	4	PSC BEAM	2종	
22	8	중들교	6+394~6+484	71.74~71.84	105.0	4	PSC BEAM	2종	
23	8	화산JCT R-A교	0+225~0+280	화산JCT연결로 (영업소↔대구포항)	55.0	1	ST.Box Girder	2종	
24	9	가래실교	0+161~0+476	75.52~75.83	315.0	4	LIT Girder	2종	
25	9	암기교	0+796~0+976	76.15~76.33	180.0	4	DR Girder	2종	
26	9	도림천교	4+811~4+991	80.17~80.35	180.0	4	DR Girder	2종	
27	9	오미교	6+290~6+340	81.65~81.70	50.0	4	SB-Arch	2종	
28	10	단포교	0+845~1+025	85.50~85.68	180.0	4	PSC BEAM (DR Girder)	2종	
29	10	대성교	4+485~4+605	89.14~89.26	120.0	4	PSC BEAM	2종	
30	10	내포교	8+425~8+545	93.08~93.20	120.0	4	PSC BEAM	2종	

• 절토사면 드론촬영(101개소)

● 2중 절토사면(25개소)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	방향	연장	높이	형식	종별	비고
1	1	상주절토05	4+330~4+630	상주	300	53	혼합	2중	
2	3	영천절토12	0+830~1+250	영천	420	32	혼합	2중	
3	3	상주절토13	0+850~1+270	상주	420	45	혼합	2중	
4	3	상주절토14	1+290~1+490	상주	200	40	혼합	2중	
5	3	상주절토15	2+090~2+320	상주	230	31	혼합	2중	
6	3	상주절토16	5+180~6+040	상주	860	43	혼합	2중	
7	3	영천절토17	5+600~6+040	영천	440	33	혼합	2중	
8	3	영천절토18	6+910~7+480	영천	570	31	혼합	2중	
9	3	영천절토19	8+740~8+960	영천	220	37	혼합	2중	
10	3	영천절토20	9+840~10+060	영천	220	46	혼합	2중	
11	3	영천절토21	10+640~11+020	영천	380	33	혼합	2중	
12	3	영천절토22	11+470~11+660	영천	190	31	혼합	2중	
13	3	영천절토23	11+660~12+100	영천	440	40	혼합	2중	
14	4	상주절토24	1+430~1+650	상주	175	45	혼합	2중	
15	4	영천절토25	2+230~2+750	영천	520	96	혼합	2중	
16	4	영천절토26	4+645~4+950	영천	305	47	혼합	2중	
17	5	상주절토27	0+000~0+140	상주	140	36	혼합	2중	
18	5	영천절토28	0+940~1+180	영천	240	41	-	2중	
19	5	상주절토29	1+930~2+220	상주	290	39	-	2중	
20	5	상주절토30	2+290~2+450	상주	160	41	혼합	2중	
21	5	영천절토31	3+790~3+940	영천	150	31	혼합	2중	
22	5	영천절토32	4+310~4+660	영천	350	47	혼합	2중	
23	5	영천절토33	군위JCT R-A 0+360~0+690	영천	330	42	혼합	2중	
24	5	영천절토34	군위JCT R-A 1+890~2+150	영천	260	36	혼합	2중	
25	6	상주절토35	이설도로#2 0+160~0+420	상주	260	37	혼합	2중	

• 절토사면 드론촬영(101개소)

● 기타종 절토사면(76개소)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이정거리)		방향	연장	높이	종별	비고
1	3공구	기타종 3-1	16.014	16.304	상주	290.0	28.0	기타	
2	3공구	기타종 3-2	16.014	16.124	영천	110.0	18.2	기타	
3	3공구	기타종 3-5	17.544	17.644	상주	100.0	20.3	기타	
4	3공구	기타종 3-11	18.894	19.034	상주	140.0	19.05	기타	
5	3공구	기타종 3-12	19.034	19.154	상주	120.0	15.47	기타	
6	3공구	기타종 3-14	19.354	19.514	상주	160.0	15.79	기타	
7	3공구	기타종 3-16	20.314	20.414	상주	100.0	25.17	기타	
8	3공구	기타종 3-17	20.414	20.514	상주	100.0	18.91	기타	
9	3공구	기타종 3-19	22.054	-	-	-	36.1	기타	군위터널 터널시점
10	3공구	기타종 3-20	22.924	22.994	영천	70.0	21.2	기타	
11	3공구	기타종 3-21	22.924	-	상주	-	25.2	기타	군위터널 터널종점
12	3공구	기타종 3-22	22.954	23.274	상주	320.0	18.8	기타	
13	3공구	기타종 3-23	22.959	-	영천	-	22.1	기타	군위터널 터널종점
14	3공구	기타종 3-24	23.654	23.954	영천	300.0	28.9	기타	
15	3공구	기타종 3-27	24.214	24.334	영천	120.0	15.33	기타	
16	3공구	기타종 3-31	25.134	25.274	영천	140.0	20.32	기타	
17	3공구	기타종 3-32	26.654	26.894	상주	240.0	14.8	기타	
18	3공구	기타종 3-33	27.314	27.484	영천	170.0	19.1	기타	
19	3공구	기타종 3-35	27.474	27.654	상주	180.0	16.8	기타	
20	4공구	기타종 4-3	30.043	30.313	상주	270.0	26.95	기타	
21	4공구	기타종 4-6	30.613	30.633	상주	20.0	19.71	기타	
22	4공구	기타종 4-7	31.113	31.173	영천	60.0	19.42	기타	
23	4공구	기타종 4-11	31.800	31.900	영천	80.0	15.0	기타	
24	4공구	기타종 4-13	31.900	32.000	영천	150.0	27.0	기타	
25	4공구	기타종 4-14	32.200	32.400	영천	160.0	24.0	기타	
26	4공구	기타종 4-16	32.133	32.223	영천	90.0	18.24	기타	
27	4공구	기타종 4-17	32.233	32.373	상주	140.0	15.9	기타	
28	4공구	기타종 4-18	32.473	32.553	상주	80.0	16.8	기타	
29	4공구	기타종 4-19	32.500	32.600	영천	80.0	18.0	기타	
30	4공구	기타종 4-21	32.613	32.673	영천	140.0	27.81	기타	

● 기타종 절토사면(76개소)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이정거리)		방향	연장	높이	종별	비고
31	4공구	기타종 4-22	32.893	32.999	상주	106.0	15.74	기타	
32	4공구	기타종 4-23	32.933	32.999	영천	66.0	21.78	기타	
33	4공구	기타종 4-25	32.833	32.958	영천	125.0	29.53	기타	
34	4공구	기타종 4-27	32.958	32.958	영천	-	16.42	기타	
35	4공구	기타종 4-28	33.347	33.347	상주	-	17.49	기타	
36	4공구	기타종 4-29	33.318	33.318	영천	-	18.88	기타	
37	4공구	기타종 4-30	33.347	33.428	상주	81.0	33.85	기타	
38	4공구	기타종 4-32	33.318	33.363	영천	45.0	25.6	기타	
39	4공구	기타종 4-33	34.143	34.229	상주	86.0	32.7	기타	
40	4공구	기타종 4-34	34.213	34.298	영천	85.0	21.28	기타	
41	4공구	기타종 4-35	34.229	34.229	상주	-	16.17	기타	
42	4공구	기타종 4-37	34.298	34.298	영천	-	20.25	기타	
43	4공구	기타종 4-39	36.123	36.187	영천	64.0	22.22	기타	
44	4공구	기타종 4-41	36.183	36.183	상주	-	19.25	기타	
45	4공구	기타종 4-42	36.183	36.234	상주	51.0	35.23	기타	
46	5공구	기타종 5-1	36.285	36.385	R-F 중앙	100.0	15.37	기타	램프
47	5공구	기타종 5-5	36.445	36.605	부체20 중앙	160.0	18.21	기타	부체도로
48	5공구	기타종 5-10	36.525	36.685	R-G 중앙	160.0	16.56	기타	램프
49	5공구	기타종 5-11	36.525	36.685	R-G 중앙	160.0	26.06	기타	램프
50	5공구	기타종 5-13	36.605	36.755	R-A 중앙	150.0	18.08	기타	램프
51	5공구	기타종 5-18	37.185	37.395	상주	210.0	18.19	기타	
52	5공구	기타종 5-19	37.185	37.455	R-A 본선	270.0	19.33	기타	램프
53	5공구	기타종 5-28	37.595	37.685	R-A 본선	90.0	15.2	기타	램프
54	5공구	기타종 5-29	37.605	37.745	영천	140.0	20.38	기타	
55	5공구	기타종 5-30	37.745	37.855	R-A 본선	110.0	15.42	기타	램프
56	5공구	기타종 5-31	38.035	38.125	상주	90.0	23.21	기타	
57	5공구	기타종 5-33	38.165	38.295	영천	130.0	19.39	기타	
58	5공구	기타종 5-35	38.295	38.445	영천	150.0	16.7	기타	
59	5공구	기타종 5-37	38.525	38.685	영천	160.0	17.1	기타	
60	5공구	기타종 5-43	39.195	39.228	상주	33.0	26.87	기타	

● 기타종 절토사면(76개소)

NO	공구	구조물명	위치(이정거리)		방향	연장	높이	종별	비고
61	5공구	기타종 5-44	39.233	39.265	영천	42.0	26.1	기타	
62	5공구	기타종 5-45	39.228	36.235	영천	-	18.83	기타	
63	5공구	기타종 5-46	39.693	36.235	영천	-	24.74	기타	
64	5공구	기타종 5-47	39.693	39.755	영천	62.0	27.37	기타	
65	5공구	기타종 5-50	39.825	40.195	영천	180.0	19.51	기타	
66	5공구	기타종 5-51	39.825	40.195	영천	100.0	15.93	기타	
67	5공구	기타종 5-54	40.175	40.305	영천	130.0	22.73	기타	
68	5공구	기타종 5-56	40.365	40.785	상주	240.0	21.61	기타	
69	5공구	기타종 5-64	42.275	36.235	영천	-	20.91	기타	
70	5공구	기타종 5-65	42.650	36.235	영천	-	20.91	기타	
71	5공구	기타종 5-66	42.650	42.685	상주	35.0	20.91	기타	
72	5공구	기타종 5-68	42.805	42.839	영천	34.0	20.61	기타	
73	5공구	기타종 5-70	43.790	36.235	영천	-	27.4	기타	
74	5공구	기타종 5-71	43.790	43.845	상주	55.0	27.4	기타	
75	5공구	기타종 5-72	43.790	43.845	상주	55.0	27.4	기타	
76	5공구	기타종 5-73	43.800	-	-		27.0	기타	효령터널 종점부

3.2 과업의 범위

(1) 과업내용

: 정기점검 3회, 정밀점검 1회, 하자점검4회, 성능평가1회 (2022년 상반기~2023년 하반기)

드론촬영 1회(2023.12.~2024.2.29.)

(관련지침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가. 정기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공사기록, 사용제한 사항, 부대시설물, 기타 환경조건 등

2) 시설물 외관상태 조사

3) 보수·보강 방법 제시

4) 시설물 유지관리시 점검 또는 진단시 중점 착안사항 제시

5) 보고서 작성 및 FMS 등록관리

나. 정밀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공사기록, 사용제한사항, 부대시설물, 기타 환경조건 등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시설물관리대장
- 보수·보강이력기재

2) 현장조사 및 시험

- 시설물 외관 상태 조사
- 외관조사망도 작성
-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필요시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3) 상태평가

- 시설물의 부재별 외관조사 및 결과 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4) 보수·보강 방법

- 보수·보강 방안(공법, 우선순위 및 시기)제시

다. 하자점검

- 1)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시 면밀한 육안점검을 통해 시공사에 하자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손상 및 하자 현황을 제공한다.
- 2) 하자점검 대상 시설물은 “3.1 하자점검 대상시설물 현황” 모두 포함하여 수행한다.
 - 하자점검 시설물현황(총122개소 : 교량 110개소, 터널12개소)
- (2) 점검결과 작성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과 실무요령에 의거 작성
 - 보고서는 시설물 발주처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한다.

라. 성능평가

- 1)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공사기록, 사용제한사항, 부대시설물, 기타 환경조건 등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안전점검, 기술자문 자료 등
 - 시설물관리대장
 - 보수보강 자료 등 기타 정밀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2)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지침” 과 “세부지침” 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필요시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성능평가에 활용한다.
 -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되거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3) 안전성능평가
 - 시설물의 부재별 외관조사 및 결과 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구조해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 안전 및 구조안전, 내구 성능평가 수행
 - 시설물 전체의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실시 결과에 따라 결정된 안전성능, 내구성능 등급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4)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전략 제안
 - 보수·보강 방안(공법, 우선순위 및 시기)제시, 유지관리 전략 제안 등

마. 드론 촬영

- 1) 2종사면 25개소, 기타종사면 76개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드론 촬영과업을 수행한다.
 - 전체 전경 사진(상단부 포함)
 - Section별 정면 사진
 - 사면 영상 녹화(원본)
- 2) 해당 촬영본의 성과품은 사면상단부, 전경, 정면(취합)으로 사진첩으로 작성한다.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지침

- (1)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다.

- 가. 착수신고서
- 나. 사업수행계획서
- 다.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라. 세부공정계획서
- 마.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바. 사업수행 조직표
- 사. 안전관리계획서
- 아. 보안각서

-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발주처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 (4)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부터 업무일지 및 공정 보고서를 작성·서명하여 발주처(과업수행 관리담당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일지 : 매일 09시 까지 제출
 - 주간공정보고서 : 매주 금요일 16시까지 제출
※금요일이 법정 공휴일일 경우, 전일 16시까지 제출
 - 월간공정보고서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16시까지 제출
※월간공정보고서 제출 시 주간공정보고서 함께 제출
- (5)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한다.
-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 (7)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수치는 정확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재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 (8) 본 과업의 적정수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 또는 성과품 평가, 성과발표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9) 과업 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의 일부로 인용 또는 활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 (10) 계약상대자는 점검완료 후, 그 결과를 용역준공 후 30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 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도급 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발주처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1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분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변경·해지 시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 (12)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서류 1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점검계획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3)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7. 점검계획 수립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4)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 (5) 현장여건 및 문제점
- (6) 점검 장비 선정
- (7) 점검종사자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 (8) 기타 점검자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8.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안전관리

9.1 일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과업 수행 전에 책임기술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그 날의 점검 항목과 점검방법 및 그에 따른 불안전 요인, 대처방법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 (2) 본 과업수행을 위한 고속도로 현장조사 작업 시에는 고속도로 순찰대와 사전협의(교통제한 등)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정한 제반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교통차단 시(갓길포함)작업 전일 16:00시 까지 발주처(고속도로 교통관계 센터)에 교통차단 계획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 (4)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은 전적으로 과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5) 현장 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화 및 필요한 경우 보안경, 개인용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 (6) 발주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월1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 및 시설물 안전점검 중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용역을 수행 하여야 한다.

9.2. 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 (1)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9.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발주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0. 보안대책

- (1) 본 과업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 착수계 제출 시 첨부 하여야 한다.
- (2)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 (3)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정보,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과업 성과품은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목적용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 (5) 과업수행 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 (1) 본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결함부, 육안점검 전경 및 비파괴시험(기록지 및 현상지 등)의 실시전반에 관하여 촬영한 후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용역기간 중 외부점검 등으로 인한 현장조사가 필요할 시는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 교량 굴절차 사용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차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터널 내부(고소차)점검은 발주처 교통차단 일정 및 통행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 외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3.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 (1) 성과품 작성 시 언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 (2)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5일전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 (3) 외관조사망도의 경우 “A3” 규격의 크기로 작성한다.
- (4) 기타 관리대장 작성 및 기록관리(신축이음장치, 교량받침, 시설물 관리대장)
- (5) 성과품 납품목록

구분	제출도서	규격	부수	비고
성과품목록	정기점검 보고서	A4	각3부	필요시 추가제출 (CAD원본 및 PDF파일 등)
	정밀점검 보고서	A4	각3부	
	하자점검 보고서	A4	각3부	
	성능평가 보고서(구조해석포함)	A4	각3부	
	외관조사망도(CAD 도면작성)	A3	각3부	
	외관조사 사진첩	A4	각3부	
	외장하드(전체수록)	HDD	3개	-
	추가과업 드론촬영(사진첩, 원본영상)	1식	1식	영상자료 포함